

의안번호	2211234
의 퇴 인	김석기의원
회 답 일	2025.8.4.
추계번호	25D3550

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제5항(봉급)	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감안한 장교·준사관·부사관 및 병 간의 보수균형을 고려하여 군인의 보수기준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도록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7조제5항(봉급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현재 군인의 보수 중 기본급은 인사혁신처에서 전체 공무원의 보수균형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하고 있으며, 수당은 국방부에서 각 군의 수당조정 요구를 종합하여 인사혁신처에 제출하면 인사혁신처에서 전 정부 부처의 수당조정 요구를 종합검토 후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수당 인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음¹⁾
-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시, 민간 노동시장의 유사한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실태조사 결과 뿐만 아니라,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감안한 장교·준사관·부사관 및 병 간의 보수 균형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1) 군인의 보수는 「군인보수법」 및 「공무원보수규정」,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, 「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수당 지급규정」, 「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, 「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」 등 규정에 근거함

- 개정안에 따라,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감안한 장교·준사관·부사관 및 병 간의 보수 균형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할 경우, 각 계급별 보수수준 변화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, 구체적인 계획의 부재로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- 국방부는 현행 보수결정 체계도 수행하는 업무의 곤란성과 계급별·신분별·근속년수를 고려한 책임성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있으므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
- 참고로, 2025년 기준 월 보수는 중령 951만원, 중위 346만원, 중사 421만원, 병장 150만원²⁾ 등임

[표 1] 계급별 월 보수 추정(2025년 기준)

(단위: 천원)

계급	대장	중장	소장	준장	대령	중령	소령
월 보수	13,864	13,623	11,914	11,501	10,988	9,506	7,301
계급	대위	중위	소위	준위	원사	상사	—
월 보수	5,075	3,460	2,842	8,315	7,996	6,185	—
계급	중사	하사	병장	상등병	일등병	이등병	—
월 보수	4,213	3,221	1,500	1,200	900	750	—

주: 1. 월보수는 기본급과 제 수당을 포함하고 있으며, 2024년 계급별 평균 월급여 실지금액에 2025년 공무원임금인상률 3.0%를 가산하여 산정함

2. 병 보수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(월 55만원) 미포함

자료: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Ⅲ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2) 병에게 지급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(월 55만원)은 미포함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